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52965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0.

판결 선고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3. 8. 19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 약정은 30,353,1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0,353,1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오형석

별지